



강원도정 소식

소독규정 위반 농가 과태료

강원도 축산농가 일제소독 점검 결과

강원도는 지난 19일 도내 전체 축산농가 일제소독 이행여부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 예방상 소독실시 규정을 위반한 2개 시군 3개 농가(춘천 1, 홍천 2)를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농장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 및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 12명을 현지 투입해 축산농가 95호(우제류 68, 가금류 27)에 대해 소독실시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한우를 사육하면서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1개 농가와 닭을 사육하면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2개 농가를 적발, 확인서를 징구한 뒤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지시했다.

강원도는 “올 겨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축사소독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11월 중 점검반 집중 투입 등 현지점검을 강화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최광호 기자

총 20억 투입하는 농어촌도로 103호 천진~인홍 확포장 사업

인근 4차선 개설로 효율성 적어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천진~인홍간 농어촌도로 103호 확포장 사업과 관련 일부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미시령~천진간 4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울창하던 소나무들이 마구 베어지고 일부는 다른 곳으로 실려 나가자, 앞으로 남은 구간 공사를 할 때는 먼저 소나무를 마을 야산에 옮겨 심은 뒤에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원활한 물류소통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30일 420m 길이의 도로 확포장 공사에 들어갔다. 올해 5억원을 들여 일부를 준공하고, 총 20억원을 투입해 3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이 도로는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정도이며, 인근에 다른 도로가 많아 굳이 개설할 필요성이 적다”며



천진~인홍 농어촌도로 103호 확포장사업과 관련 일부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미시령~천진간 4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최초 설명회 당시 주민들이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천진~봉포간 해안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천진2리 이동환 이장은 “작공 이전에 일부 주민들로부터 그런 말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토성 남부권 마을에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서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며 “결과

적으로 우리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가 생겨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최근에 부서 배치를 받아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건축물 이행강제금 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의 위반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줄여주거나 반대로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위반 규모와 경위에 따라 감경하거나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1991년 건축법에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해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매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일부 불합리한 사례도 드러남에 따

라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과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납부대상자가 영세한 경우에는 다소 과한 면이 있었다”며 “반대로 불법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면서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권익위는 또한 위반 규모 산정이 가능한 경우 위반 규모에 비례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토록 하는 개선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불법으로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해제하면 위반 규모가 같아도 당해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축법 위반으로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도입취지를 살려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원광연 기자

해양심층수 특구 지정 근거 마련

송훈석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관광특구 관련 법안도

송훈석 국회의원(민주당, 속초-고성-양양)이 해양심층수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의원은 또 관광특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가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양심층수 관련법= 송의원이 21일 대표발의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우선 해양심층수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양심층수산업특구 지정 지역의 시·도지사는 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해 특구 진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해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 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해양심층수개발특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특구 관련법= 송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관광특구에 속하는 관광사업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활동촉진계획서를 작성해 관광사업활동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광사업활동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내에는 설악산관광특구와 대관령관광특구 등 2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으며, 설악산관광특구는 속초시 전역과 고성군 토성면, 양양군 양양읍과 강현면 등 138㎢가 지정

돼 있다. 송훈석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두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성군을 비롯한 설악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민주당 송훈석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고성축협에서 '일일 명예조합장'으로 활동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고성축협 사무실에서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조합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3시부터는 창구에서 축협을 찾은 예금고객을 안내하고 응대하면서 고객의 불편사항 등을 청취했다.